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14 선고 2020나332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9. 14.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3198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20. 3. 9.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특허권의 표시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0. 3. 9. 접수 D로 마친, 같은 표시 제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0. 3. 9. 접수 E로 마친, 같은 표시 제3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0. 3. 9. 접수 F로 마친 각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별지 특허권의 표시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은 특허권자인 I가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제 권리자인데 그 특허권자 명의만을 주식회사 C에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을 I가 주식회사 C에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주식회사 C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대현, 판사 이재민, 판사 고병용

별지

특허권의 표시

1. 특허번호 :
출원번호 :
분류기호 : G01F 15/18, G01F 15/10
발명의 명칭 :
특허결정연월일 : 2013.08.01.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3년 05월 28일

가액: 금20,000,000원

2. 특허번호 :
출원번호 :
분류기호 : G086 17/02, G08B 13/00, G08B 21/10, G08B 21/18
발명의 명칭 :
특허결정연월일 : 2018.05.11.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6년 10월 14일

가액: 금30,000,000원

3. 특허번호 :
출원번호 :
분류기호 : G01F 15/06, G01D 21/02, G01D 4/00, G01D 4/02
발명의 명칭 :
특허결정연월일 : 2019.01.24.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38년 08월 13일

가액: 금30,000,000원

